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본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1999년 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

-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3개소(300평 이상)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 취득승인 요청

-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서,
-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3개소에 3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1,765,162천원이 되겠습니다.

■. 취득방법

-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

■. 참고사항

-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

■. 검토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 3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그러나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안에 의한 매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 선정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적정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 이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3조 사본